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3월 25일(수)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2월 25일, 이용진 의원 등 11명(의안번호568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10일

다. 상정일자: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6년 3월 2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용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제17조제1항, 별표 5)
 -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10일 →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25일)

- “해직” 을 「지방공무원법」 상 용어인 “면직” 으로 개정(안 제11조)
- 띄어쓰기 및 현행 용어 사용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제17조제1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 입법예고 : 2026. 3. 3. ~ 2026. 3. 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정경)

가. 상위법령 개정 취지 반영 및 행정용어 정비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임
- 기존의 ‘해직’이라는 용어를 법령 용어인 ‘면직’으로 수정하고, 문맥에 맞지 않는 조사를 정비하는 등 구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은 타당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3월 25일(수)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2월 25일, 소형준 의원 등 14명(의안번호570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10일

다. 상정일자: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6년 3월 2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변경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날짜와 안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며,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을 개정하고자 함. 이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잘못된 띄어쓰기 및 문장 구조를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호)
- 정례회 안건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호 및 2호)
-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제3호)
- 일본식 표현 및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 입법예고 : 2026. 3. 3. ~ 2026. 3. 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정경)

가.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에 따른 회기 일정 조정의 적정성

- 현황: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라, 연말 의사일정(감사 + 예산안 심사)이 집중되는 상황임
- 확보: 이를 대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5일 앞당겨 전체 회기 일정을 추가로 확보함(안 제25조제2호)
- 감사 기간은 향후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나, 집회일 조정을 통해 심사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점은 감사와 예산 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나. 조례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연동 개정

- 배경: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옮기기 위해서는 실시 근거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와 정례회 안건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를 병행하여 개정해야 법적 체계가 완성됨
- 내용: 이에 따라 기본 조례에서 1차 정례회 안건이었던 ‘행정사무감사’ 를 삭제하고, 이를 본 조례 제2조와 함께 제2차 정례회로 통합하여 정합성을 확보함.

구분	관련조항	변경전	변경후
기본조례	안 제44조 (정례회의 운영)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행감'규정	제1차에서 삭제 후 제2 차로 이관
행정사무감사조례	안 제2조(감사) 제2항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 명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로 변경

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체계 정비

- 내용: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 한시 기구인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규정을 삭제하여 상임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 효과: 행정 조직의 변화를 조례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신뢰를 제고함.

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자치법규 정비

마.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를 결산 확인의 수단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길잡이로 격상시키려는 의지의 산물임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2)¹⁾개 의회가 이미 제2차 정례회(11월~12월)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의 결과를 내년 예산안 심사에 즉각 반영하려는 것임
- 기존의 6월 감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확정된 수치로 꼼꼼하게 따져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다음 해 예산 편성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실제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 반면, 이번 개정안과 같이 감사를 11월로 옮기게 되면 당해 연도 주요 사업의 집행 실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특히 낭비되거나 잘못 쓰인 예산을 확인하여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긋남 없이 즉각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1) (2)는 행정사무감사를 1차 또는 2차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구의회 숫자임.

- 비록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한꺼번에 몰려 업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나, 이를 대비해 집회일을 5일 앞당겨 감사와 예산 심사 사이의 연계 분석 및 심사 여력을 확보한 점은 적절한 조치임
- 또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리하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 점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I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최상위 근거임.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53조]

- 감사의 실시 시기, 대상 기관, 감사 방법(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이내의 사무
 - 국가·시 위임사무(국회 또는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제외)

□ 지방자치단체 조례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감사 시기(1차 또는 2차 정례회), 세부 일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 자치단체별로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의회의 기본 조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

II

서울시 자치구 행정사무감사 시기 현황

연번	자치구	시기	정례회 (1차)	정례회 (2차)	기간	행정사무감사
1	강남구	2차	6월 10일	11월 15일	50일 이내	기본 조례(제21조)
2	강동구	2차	6월 첫 번째 수요일	11월 세 번째 수요일	50일 이내	
3	강북구	2차	6월 1일/	11월 17일	50일 이내	
4	강서구	2차	6월 1일	11월 15일	80일 이내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5	관악구	2차	6월 8일	11월 20일	50일 이내	기본 조례(제31조)
6	광진구	1차 또는 2차	5월 26일	11월 22	50일 이내	기본 조례(제9조)
7	구로구	1차	5월 네 번째 화요일	11월 27일	55일 이내	
8	금천구	1차	6월 1일	11월 15일	60일 이내	
9	노원구	2차	6월 1일	11월 18일		기본조례(제9조)
10	도봉구	2차	6월 8일	11월 17일		
11	동대문구	1차	5월 26일	11월 27일		
12	동작구	2차	6월 10일	11월 13일	60일 이내	
13	마포구	1차	6월 1일	11월 25일	50일 이내	
14	서대문구	1차	6월 첫 번째 목요일	11월 둘째 주 화요일	65일 이내	기본 조례(제25조)
15	서초구	2차	6월 1일	11월 15일	60일 이내	기본 조례
16	성동구	1차	6월 5일	11월 25	50일 이내	
17	성북구	1차	6월 2일	11월 20일	50일 이내	
18	송파구	2차	6월 두 번째 수요일	11월 19일	45일 이내	
19	양천구	1차	5월 25일	11월 29일		
20	영등포구	2차	6월 12일	11월 20일	60일 이내	
21	용산구	2차	6월 1일	11월 20일	50일 이내	기본 조례
22	은평구	2차	5월 네 번째 화요일	11월 두 번째 화요일	60일 이내	
23	종로구	1차	6월 첫 번째 목요일	11월 20일	20일 이상	기본 조례(제15조)
24	중구	1차 또는 2차	6월 첫째 주 수요일	11월 셋째 주 수요일	50일 이내	기본 조례
25	중랑구	1차	5월 25일	11월 28일	60일 이내	기본 조례

구분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1차 또는 2차
개소수(25)	10	13	2
해당 의회	구로, 금천,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종로, 중랑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노원, 도봉, 동작,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은평	광진구, 중구

III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연혁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조례 개정 연혁>

	개정시행일	내용	행감 시행 시기
1	1991. 4. 13	시기 명시 없음	91. 12. 6 정기회
2	1992. 4. 30	제2조(감사)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되 ...	92. 11. 25, ~ 93. 11. 25 정기회기 중 실시
3	1994. 11. 1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94. 11. 25.~ 99. 11. 25 정기회기 중 실시
4	2000. 4. 1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정례회 2회 실시 2000. 6, 10 ~ 1차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5	2008. 3. 1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1차 정례회기 중
6	2011. 12. 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1차 정례회기 중

IV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

□ 시기 변경 시 변화되는 점

구분	현행(1차 정례회/6월)	변경 시(2차 정례회/11월)
감사 대상 기간	◆ 전년도 확정 사업 + 당해 연도 상반기	◆ 당해 연도 진행 사업 (거의 1년치)
데이터 기준	◆ 전년도 결산서 기준 (완결된 데이터)	◆ 당해 연도 집행 현황 (진행 중인 데이터)
연계 업무	◆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환류, 사후적 확인 및 시정 요구	◆ 실시간 점검 및 예산 연계 ◆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즉시 반영

□ 시기별 장·단점

구분	1차	2차
장점	① 결산과의 연계: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결산)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므로, 확정된 수치에 근거한 정확한 비판이 가능	① 예산 환류의 실효성 극대화: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와 과오를 즉시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 또는 증액 근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음 ② 당해 연도 사업의 실시간 평가: 11월에 실시하므로 사실상 1년치 업무 전체를 훑어볼 수 있어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 ③ 행정의 긴장도 유지: 연말 본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음.
단점	① 예산 편성과의 괴리: 감사가 끝난 후 다음 해 예산 편성까지 시차가 있어, 감사 결과가 예산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① 의회 및 집행부 피로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한꺼번에 몰려 심도 있는 검토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2차 정례회 변경 시 당해 연도 예산 집행 현황 과 불용 예산 현황 및 사유를 집중 점검함. 이를 통해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쓰는 ‘밀어내기식 집행’을 방지하고, 남은 예산을 확인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즉각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내년도 예산 삭감이라는 강력한 환류 시스템, 11월 감사를 통해 당해 연도 성과평가와 차기 연도 예산 편성의 유기적 결합 도모

V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 추가

□ 개정 사유

- 행정기구 조직새편 반영: 한시기구였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 운영 종료 (2025.12.31.)됨에 따라 해당 기구를 폐지함
- 소관 부서 조정: 폐지된 추진단의 업무가 '도시관리국 신속정비도시과'로 신설 및 이관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6.]
- 2026. 1. 1.자 행정조직 개편 확정 (행정지원과-42439)

□ 주요 조직개편 내용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변동 사항
구본청	6국 1단 1담당관 31과	6국 1담당관 32과	1단(추진단) 감소, 1과 증가
보좌기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운영	폐지 (한시기구 종료)	-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등	신속도시정비과 신설	추진단 업무 이관 반영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3월 25일(수)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2월 25일, 소형준 의원 등 14명(의안번호569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10일

다. 상정일자: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6년 3월 2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 기간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하여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잘못된 띄어쓰기 및 문장 구조를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게 수정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기간에서 제2차 정례회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항)
- 일본식 표현 및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 입법예고 : 2026. 3. 3. ~ 2026. 3. 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정경)

가.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의 적정성 검토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6월) 기간에서 제2차 정례회(11월~12월) 기간으로 변경함
- 감사를 연말인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함으로써 당해 연도 사업 전반에 대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며, 특히 그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즉각 반영하는 감사-예산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실시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9일 이내로 유지하되, 정례회 안건 조정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어긋남 없이 일치시켜 행정사무감사를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길잡이로 만들려는 핵심적인 입법 조치임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22)개 의회가 이미 제2차 정례회(11월~12월)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채택하고 있는 흐름에 부합하며, 감사의 결과를 예산안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기틀을 마련함

2) 광진구, 중구는 행정사무감사를 1차, 2차 정례회 중 선택 실시

- 연말에 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병행됨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기본 조례에서 확보한 5일의 선제적 회기 일정(11월 15일 집회)을 활용한 고효율 감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감사의 실효성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I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최상위 근거임.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53조]

- 감사의 실시 시기, 대상 기관, 감사 방법(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이내의 사무
 - 국가·시 위임사무(국회 또는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제외)

□ 지방자치단체 조례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감사 시기(1차 또는 2차 정례회), 세부 일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 자치단체별로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의회의 기본 조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

II

서울시 자치구 행정사무감사 시기 현황

연번	자치구	시기	정례회 (1차)	정례회 (2차)	기간	행정사무감사
1	강남구	2차	6월 10일	11월 15일	50일 이내	기본 조례(제21조)
2	강동구	2차	6월 첫 번째 수요일	11월 세 번째 수요일	50일 이내	
3	강북구	2차	6월 1일/	11월 17일	50일 이내	
4	강서구	2차	6월 1일	11월 15일	80일 이내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5	관악구	2차	6월 8일	11월 20일	50일 이내	기본 조례(제31조)
6	광진구	1차 또는 2차	5월 26일	11월 22	50일 이내	기본 조례(제9조)
7	구로구	1차	5월 네 번째 화요일	11월 27일	55일 이내	
8	금천구	1차	6월 1일	11월 15일	60일 이내	
9	노원구	2차	6월 1일	11월 18일		기본조례(제9조)
10	도봉구	2차	6월 8일	11월 17일		
11	동대문구	1차	5월 26일	11월 27일		
12	동작구	2차	6월 10일	11월 13일	60일 이내	
13	마포구	1차	6월 1일	11월 25일	50일 이내	
14	서대문구	1차	6월 첫 번째 목요일	11월 둘째 주 화요일	65일 이내	기본 조례(제25조)
15	서초구	2차	6월 1일	11월 15일	60일 이내	기본 조례
16	성동구	1차	6월 5일	11월 25	50일 이내	
17	성북구	1차	6월 2일	11월 20일	50일 이내	
18	송파구	2차	6월 두 번째 수요일	11월 19일	45일 이내	
19	양천구	1차	5월 25일	11월 29일		
20	영등포구	2차	6월 12일	11월 20일	60일 이내	
21	용산구	2차	6월 1일	11월 20일	50일 이내	기본 조례
22	은평구	2차	5월 네 번째 화요일	11월 두 번째 화요일	60일 이내	
23	종로구	1차	6월 첫 번째 목요일	11월 20일	20일 이상	기본 조례(제15조)
24	중구	1차 또는 2차	6월 첫째 주 수요일	11월 셋째 주 수요일	50일 이내	기본 조례
25	중랑구	1차	5월 25일	11월 28일	60일 이내	기본 조례

구분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1차 또는 2차
개소수(25)	10	13	2
해당 의회	구로, 금천,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종로, 중랑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노원, 도봉, 동작,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은평	광진구, 중구

III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연혁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조례 개정 연혁>

	개정시행일	내용	행감 시행 시기
1	1991. 4. 13	시기 명시 없음	91. 12. 6 정기회
2	1992. 4. 30	제2조(감사)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되 ...	92. 11. 25, ~ 93. 11. 25 정기회기 중 실시
3	1994. 11. 1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94. 11. 25.~ 99. 11. 25 정기회기 중 실시
4	2000. 4. 1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정례회 2회 실시 2000. 6, 10 ~ 1차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5	2008. 3. 1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1차 정례회기 중
6	2011. 12. 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1차 정례회기 중

IV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

□ 시기 변경 시 변화되는 점

구분	현행(1차 정례회/6월)	변경 시(2차 정례회/11월)
감사 대상 기간	◆ 전년도 확정 사업 + 당해 연도 상반기	◆ 당해 연도 진행 사업 (거의 1년치)
데이터 기준	◆ 전년도 결산서 기준 (완결된 데이터)	◆ 당해 연도 집행 현황 (진행 중인 데이터)
연계 업무	◆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환류, 사후적 확인 및 시정 요구	◆ 실시간 점검 및 예산 연계 ◆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즉시 반영

□ 시기별 장·단점

구분	1차	2차
장점	① 결산과의 연계: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결산)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므로, 확정된 수치에 근거한 정확한 비판이 가능	① 예산 환류의 실효성 극대화: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와 과오를 즉시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 또는 증액 근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음 ② 당해 연도 사업의 실시간 평가: 11월에 실시하므로 사실상 1년치 업무 전체를 훑어볼 수 있어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 ③ 행정의 긴장도 유지: 연말 본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음.
단점	① 예산 편성과의 괴리: 감사가 끝난 후 다음 해 예산 편성까지 시차가 있어, 감사 결과가 예산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① 의회 및 집행부 피로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한꺼번에 몰려 심도 있는 검토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2차 정례회 변경 시 당해 연도 예산 집행 현황 과 불용 예산 현황 및 사유를 집중 점검함. 이를 통해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쓰는 ‘밀어내기식 집행’을 방지하고, 남은 예산을 확인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즉각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내년도 예산 삭감이라는 강력한 환류 시스템, 11월 감사를 통해 당해 연도 성과평가와 차기 연도 예산 편성의 유기적 결합 도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